유한회사 (설립·운영)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한회사 (설립·운영)]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1인 이상의 사원을 구성하고 , ② 정관을작성한 다음, ③ 이사를 선임하고, ④ 사원이 출자금을 납입 한 후, ⑤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등을 끝마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유한회사가 설립한 후, 정관을 변경하거나 자본금을 증가 또는 감소하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유한회사의 지분을 갖고,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며, 질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설립·운영) 1
1. 회사제도 이해하기 4
1.1. 회사와 유한회사 4
1.1.1. 회사의 개념 4
1.1.2. 유한회사의 개념 6
2. 유한회사 설립 10
2.1. 정관의 작성 등 10
2.1.1. 정관작성 10
2.1.2. 정관의 공증 12
2.2.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13
2.2.1. 이사·감사선임 및 출자이행 13
2.3.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14
2.3.1. 인허가 및 세금납부 14
2.3.2.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15
3. 유한회사 운영 18
3.1. 유한회사 사원 18
3.1.1. 사원의 권리와 의무 18
3.1.2. 사원의 지분 등 19
3.2. 유한회사의 기관 22
3.2.1. 사원총회 22
3.2.2. 이사 25
3.2.3. 감사 28
3.2.4. 검사인(檢査人) 32
3.3. 정관의 변경 등 33
3.3.1. 정관의 변경 33
3.3.2. 자본금의 증가 35
3.3.3. 자본금의 감소 37
3.4. 본점·지점의 변경 38
3.4.1. 본점의 이전 및 지점등기 38
3.5. 회사의 회계와 계산 등 40
3.5.1. 재무제표 등의 작성 40
3.5.2. 이익의 배당 41
4. 회사의 합병, 소멸 등 44
4.1.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44
4.1.1. 영업양도 44
4.1.2. 합병 47
4.1.3. 조직변경 53
4.2. 유한회사의 소멸 55
4.2.1. 유한회사의 해산 등 55
4.2.2. 유한회사의 청산 57

1. 회사제도 이해하기

1.1. 회사와 유한회사

1.1.1. 회사의 개념

회사란?

회사의 개념

▪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상법」 제169조). 따라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법인이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회사의 특성

▪ 영리성

▹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외적 수익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와 같은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법인성

▹ 회사는 법인성을 가져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법인성을 갖는다는 것은 구성원인 사원과 회사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므로 회사는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사원은 회사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회사의 종류

「상법」상 회사의 종류

▪ 「상법」에서는 회사를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 ⑤ 유한회사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70조).

합명회사

▪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12조제1항 참조).

▪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전담할 사원을 정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여러 명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200조 및 제207조 참조).

> ※ 합명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합명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68조 및 제279조 참조).

▪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유한책임사원은 대표권한이나 업무집행권한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시할 권한을 갖습니다(「상법」 제273조, 제277조 및 제278조 참조).

> ※ 합자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합자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사모(私募)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개정, 2012. 4. 15. 시행) 제·개정이유서 참조].

▪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87조의7 참조).

▪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 놓아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2제1항 및 제287조의19 참조).

> ※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31조 참조).

▪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이를 소집해야 하고,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와 같은 감사기관을 둡니다(「상법」 제361조, 제365조, 제382조, 제389조 및 제409조 참조).

※ 주식회사는 주식을 단위로 자본이 구성되므로 자본집중이 쉽고,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이 적어 공동기업의 형태로 자주 이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회사 형태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5%에 달합니다[국세통계 > 세목별 검색(2025) > 8-1-2. 법인세 신고 현황II, 국세청 국세통계].

> ※ 주식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주식회사 설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553조 참조).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상법」 제561조, 제562조 및 제547조 참조).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갖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 이 콘텐츠에서는 유한회사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1.1.2. 유한회사의 개념

유한회사란?

유한회사의 개념

▪ "유한회사"란 다수의 균등액의 출자로 구성되는 자본을 가지고 사원 전원이 회사에 대한 자본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 특질을 가진 물적회사로서 상행위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단법인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 유한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다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유한회사	주식회사
자본금	정관기재사항 및 등기사항 (「상법」 제543조제2항제2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	등기사항 (「상법」 제317조)
설립시 검사인의 조사	없음	있음 (「상법」 제299조)
사원의 공모	불가능	허용(모집설립 가능) (「상법」 제301조)
이사의 수	1인 이상 (「상법」 제561조)	3인 이상.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으로 가능 (「상법」 제383조)
이사회	없음	필수기관.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경우에는 예외 (「상법」 제390조, 제383조제5항 및 제6항)
감사	임의기관 (「상법」 제568조제1항)	필수기관.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 (「상법」 제312조 및 제409조제4항)
증자방법	사원총회특별결의 (「상법」 제584조 및 제585조)	이사회결의 (「상법」 제416조)
사채발행	불가능	가능 (「상법」 제469조)

유한회사 설립 및 운영 개관

유한회사의 설립개관

▪ 정관의 작성

▹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원을 구성하고 회사의 설립목적, 회사상호를 정하고 자본금의 총액을 정하는 등의 정관작성을 먼저 해야 합니다(「상법」 제543조).

▪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 정관으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547조).

▹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를 회사에 출자합니다(「상법」 제548조).

▪ 인허가 및 세금납부

▹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할 경우, 영위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인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서류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허가·등록·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가중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 유한회사 설립등기

▹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유한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며,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제549조).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 유한회사의 업무를 대표하는 이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등).

> **※ 유한회사 설립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 - 유한회사 설립절차 및 각종 필요서류, 유한회사 설립에 관한 온라인 민원신청,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 유한회사 설립 전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운영 개관

▪ 유한회사의 사원

▹ 유한회사의 사원은 1인 이상 구성되고,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갖습니다.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음)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4조 및 제556조 등).

▪ 기관구성

▹ 유한회사의 의사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사원총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576조, 제584조, 제598조 및 제609조 참조).

▪ 정관변경

▹ 유한회사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584조).

▹ 정관변경 특별결의는 사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고 동시에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사람의 동의로 결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법」 제585조제1항).

▪ 자본금의 증가 및 감소

▹ 자본금의 총액을 증가시키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며,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543조, 제584조, 제585조제1항 및 제591조 등).

▹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므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584조 및 제585조).

▹ 자본금 감소의 실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는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3조).

2. 유한회사 설립

2.1. 정관의 작성 등

2.1.1. 정관작성

정관의 작성

사원의 정관작성

▪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유한회사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543조제1항).

> ※ **정관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
>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여 각 유한회사에 맞게 정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① 법무부(www.moj.go.kr)
>
> 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절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543조제2항 및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목적

> ※ **회사의 설립목적**
>
>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유한회사의 목적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참조).

> 그 밖에 회사 설립목적의 필요성, 회사의 사업목적을 정하는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식회사 설립』의 < 주식회사 설립준비-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설립목적 정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호

> ※ **유한회사의 상호 정하기**
>
>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 반드시 "유한회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19조).

그 밖에 상호를 정하는 방법, 유의사항, 상호등기 방법 및 상호가등기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식회사 설립』의 < 주식회사 설립준비-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회사상호 정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의 총액

※ 2012년 4월 15일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최저 자본금총액 규정이 삭제되어,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최소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5. 출자1좌의 금액

※ **출자 1좌의 금액 정하기**

유한회사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546조).

6. 각 사원의 출자좌수

7. 본점의 소재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변태설립사항)

▪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544조).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 회사의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 유한회사는 발기인이 없으므로, 주식회사의 경우와 달리 발기인에 대한 특별이익이나 발기인의 보수와 관련한 사항은 변태설립사항에서 제외됩니다(「상법」 제290조 참조).

변태설립사항이란 무엇인가요?

Q. 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變態設立事項)에 해당하여 반드시 정관에 작성하라고 하던데, 변태설립사항이란 무엇인가요?

A. “변태설립사항”이란 설립 당시에 사원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유한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① 현물출자를 하는 사람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하는 출자좌수, ② 회사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③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이 있습니다(「상법」 제544조).

이 중에서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출자재산을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 하는 사람의 성명과 그 목적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관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임의적 기재사항)

▪ 회사가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 또는 유한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예: 이사·감사의 선임, 영업연도 등)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위의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절대적 기재사항)" 외의 사항을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에 따라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2.1.2. 정관의 공증

정관의 효력발생(공증)

정관의 공증

유한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543조제3항 및 제292조 본문).

> ※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사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543조제3항 및 제292조 단서).

공증 절차 및 필요서류

▪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함)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3조제1항).

▪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공증인법」 제63조제2항).

▪ 공증인은 위의 기재를 한 정관 중 1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1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3조제3항).

공증수수료

▪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까지는 8만원으로 하고, 출자총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제1항).

출자총액	수수료
5천만원 이하	8만원
5천만원 초과	8만원에 그 5천만원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수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예) 출자총액이 10억원인 경우: 8만원 + 9억 5천만원(1/2000) = 55만 5천원

2.2.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2.2.1. 이사·감사선임 및 출자이행

초대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의 선임

▪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547조제1항).

▪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7조제2항).

> ※ 사원총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유한회사 운영 — 유한회사의 기관 — 사원총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선임

▪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상법」 제568조제1항).

※ 유한회사의 감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상법」 제312조 참조).

▪ 정관으로 감사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사원총회도 마찬가지로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8조제2항 및 제547조).

출자의 이행

출자의 납입 및 현물출자의 이행

▪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합니다(「상법」 제548조제1항).

▪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548조제2항 및 제295조제2항).

※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 또는 가설인(假設人)의 명의로 출자를 인수한 사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4조).

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 시의 사원의 책임

▪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는 ① 현물출자를 하기로 약정한 재산, ② 회사의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회사성립 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50조제1항).

▪ 이러한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합니다(「상법」 제550조제2항).

출자 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 회사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않은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않은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51조제1항).

▪ 이러한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출자 미필액에 대한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1조제2항 및 제3항).

2.3.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2.3.1. 인허가 및 세금납부

사업의 인허가 확인 및 신청

인허가 여부 확인하기

▪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영위하려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창업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 인허가 사항 확인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식회사 설립』의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인허가 및 세금납부-사업의 인허가 확인 및 신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등록면허세의 납부

▪ 유한회사 설립시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

▪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매 1건당 40,200원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마목).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중과세

▪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 현재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
> · 서울특별시
>
>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함]
>
>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함)은 제외함]

▪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위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본문).

※ 다만,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함)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3배가 가산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지방교육세의 납부

▪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 다만,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도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방법**
>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려면 관할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인터넷납부[이텍스(etax.seoul.go.kr)를, 지방에서는 위텍스(wetax.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3.2.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유한회사 설립등기

회사의 성립

▪ 유한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등기신청 기간

▪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출자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1항).

등기사항

▪ 유한회사 설립등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2항, 제179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1. 정관의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와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자본금의 총액, 출자1좌의 금액에 관하여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함)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 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
>
> 유한회사 설립등기 방법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와 같으므로 유한회사의 설립등기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식회사 설립』의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주식회사 설립등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의 개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성립합니다.

> **※ 신청 및 첨부서류**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 정관(외국법인만 해당) 1부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한 경우에만 해당) 1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 1부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부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 1부
-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1부
- 신탁 계약서(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만 해당) 1부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1부

세무서장의 직권등록

-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국외사업자 등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를 거쳐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미등록 시 불이익(가산세의 부과)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노동절은 산정에서 제외함)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3. 유한회사 운영

3.1. 유한회사 사원

3.1.1. 사원의 권리와 의무

유한회사의 사원

사원의 자격

▪ 유한회사 사원의 자격조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회사나 그 밖의 법인도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Q.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명한 상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작은 규모의 회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작은 규모의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가 직접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A.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출자를 한 사원으로 구성되므로,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유한회사의 출자좌수를 갖는 사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원의 자격조건과 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도 유한회사의 사원이 되어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부모님의 동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설립이 가능합니다(「민법」 제5조 참조).

사원총수의 제한

▪ 개정 전 「상법」 제545조에서는 유한회사 사원의 총수는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원의 총수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여 유한회사 사원의 총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은 1인 이상이면 됩니다[「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참조].

사원의 권리와 의무

사원의 권리

▪ 유한회사의 사원은 대표적으로 다음의 권리(자익권 및 공익권)를 갖습니다.

구분	내용
자익권 (사원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리)	1. 이익배당청구권: 유한회사의 이익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580조). 2.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유한회사를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12조). 3. 출자인수권: 유한회사의 사원은 증가할 자본금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를 갖습니다(「상법」 제588조 전단).
공익권 (사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회사경영에 참여할 권리)	1. 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상법」 제575조 전단). 2. 서류열람청구권: 사원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정관, 사원총회의 의사록 및 사원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6조제3항). 3. 회사설립 무효·취소의 소 제기권: 사원은 회사설립무효의 소송 또는 취소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2조제1항). 4. 증자무효의 소 제기권: 자본금을 증가시킨 경우 자본금 증가행위에 일정한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사원은 증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95조제1항). 5. 사원총회소집청구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2조제1항). 6. 이사해임청구권: 유한회사의 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7조 및 제385조). 7. 대표소송제기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5조제1항). 8. 사원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1조제1항). 9.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2조제1항).

사원의 의무와 책임

-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상법」 제553조).

- 다만, 사원의 책임은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가중시킬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설립 시 또는 증자 시에 자본전보책임(현물출자 등 재산의 실가가 부족한 경우 및 사원의 출자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부담하는 책임을 말함)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상법」 제550조, 제551조 및 제593조 참조).

3.1.2. 사원의 지분 등

사원의 지분

지분의 개념

▪ 유한회사의 지분은 유한회사의 사원이 회사에 대해 갖는 법률상의 지위를 말합니다.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갖습니다(「상법」 제554조).

▪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합니다(「상법」 제555조).

지분의 공유

▪ 수인이 공동으로 유한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58조 및 제333조제1항).

▪ 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558조 및 제333조제2항).

▪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됩니다(「상법」 제558조 및 제333조제3항).

사원지분의 양도

지분의 양도

▪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6조).

지분이전의 대항요건

▪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이로써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557조).

사원지분의 입질

지분의 입질

▪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9조제1항).

※ “질권(質權)”이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사원)의 물건(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다가, 변제가 없으면 물건(회사의 지분)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擔保物權)을 말합니다(「민법」 제329조 및 제345조).

▪ 질권자는 사원명부에 정확하게 주소를 기재해야 회사로부터 그 기재한 주소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부정확하게 기재하여 회사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상법」 제560조제2항 및 제353조).

정관으로 입질이 제한된 경우 사원총회 특별결의

▪ 사원의 지분입질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가능하므로, 정관으로 입질이 제한된 경우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입질이 가능합니다(「상법」 제559조제2항 및 제556조).

▪ 또한 지분의 입질은 사원과 질권자간의 질권설정계약으로 성립되며, 사원명부에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입질된 출자좌수를 기재해야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9조제2항 및 제557조).

지분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 시 질권자의 질권행사

▪ 사원명부에 등록된 질권자는 지분의 소각, 병합(倂合),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질권이 설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원이 받을 금전이나 지분에 대하여 종전의 지분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60조제1항, 제339조 및 제340조제1항·제2항).

회사의 자기지분 취득 및 질취

회사의 자기지분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가 발행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회사의 자기지분 취득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자기지분 취득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0조제1항 및 제341조의2).

-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원이 지분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자기지분의 질취(質取)

▪ 유한회사는 발행지분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지분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하지만,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지분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0조제1항 및 제341조의3).

지분의 처분 및 소각

자기지분의 처분

▪ 회사가 자기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사원이 가진 출자좌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560조제1항 및 제342조제1항).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원 외의 자에게 자기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0조제1항, 제342조제2항 및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
  - √ 회사가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 회사가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 √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 회사가 자기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이사가 수인인 경우 이사 과반수의 결의)가 결정합니다. 다만,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사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560조제1항, 제342조제3항 및 제564조제1항).

- 처분할 지분과 그 출자좌수
- 처분할 지분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 지분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지분의 소각

▪ 유한회사의 지분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지분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이사가 수인인 경우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0조제1항 및 제343조제1항).

> ※ 자본금 감소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의 < 유한회사 운영-정관의 변경 등-자본금의 감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유한회사의 기관

3.2.1. 사원총회

사원총회

사원총회의 개념

▪ 사원총회는 유한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유한회사 전사원으로 구성된 기관을 말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상법」 제390조 참조), 사원총회는 유한회사의 결정사항을 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원총회의 권한

▪ 사원총회는 회사가 영업양도 등을 하는 경우(「상법」 제576조제1항),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상법」 제584조), 합병을 하려는 경우(「상법」 제598조), 해산을 하려는 경우(「상법」 제609조제1항제2호) 특별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권한이 「상법」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음에 반하여(「상법」 제361조), 유한회사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사원총회의 소집

소집권자

▪ 사원총회는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1조제1항).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2조제1항).

▹ 이러한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은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원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2조제3항 및 제366조제2항).

▹ 또한 사원에 의해 소집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2조제3항).

> ※ 자본금 총액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에 대한 총회소집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2조제2항).

총회 소집시기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해야 합니다. 다만,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상법」 제578조, 제365조제1항 및 제2항).

▪ 임시총회는 필요 있는 경우에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8조 및 제365조제3항).

소집절차

▪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571조제2항).

※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하며,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에서 소집해야 합니다(「상법」 제571조제3항, 제363조제2항 및 제364조).

▪ 다만,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상법」 제573조).

사원총회에서의 결의방법

사원의 의결권

▪ 각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575조), 복수의결권도 가능합니다.

※ 이 때 회사가 가진 자기지분은 사원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없습니다(「상법」 제578조 및 제369조제2항).

▪ 사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78조 및 제368조제2항).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 사원총회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법」 제578조, 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

사원총회 결의

▪ 사원총회에서의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결의내용	결의방법
보통결의	√ 이사·감사의 선임 및 보수의 결정(「상법」 제567조, 제570조, 제382조, 제388조 및 제574조) √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상법」 제564조제3항) √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578조 및 제367조) √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583조 및 제449조제1항)	**“보통결의”란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는 결의를 말합니다(「상법」 제574조).**
특별결의	√ 지분양도(「상법」 제556조) √ 영업양도 등과 사후설립(「상법」 제576조) √ 정관변경(「상법」 제584조 및 제585조) √ 회사의 해산(「상법」 제609조) √ 회사의 계속(「상법」 제610조)	**“특별결의”란 사원의 출자좌수와 상관없이 사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고 동시에 총사원의 의결권 4분의 3 이상을 갖는 사원의 동의로 하는 결의를 말합니다(「상법」 제585조제1항).**
특수결의	√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상법」 제607조제1항)	**“특수결의”란 총사원의 일치로 하는 결의를 말합니다(「상법」 제607조제1항).**

서면에 의한 결의

▪ 총회의 결의를 해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7조제1항).

▪ 이 경우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577조제2항).

▪ 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577조제3항).

▪ 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하므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통결의, 특별결의 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에 따릅니다(「상법」 제577조제4항).

※ 서면결의의 경우에도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가능하며(「상법」 제578조 및 제368조제2항), 결의사항에 대하여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78조 및 제368조제3항). 또한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578조 및 제373조).

결의의 하자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8조 및 제376조).

의결권에 관한 처벌규정

- 사원총회에서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이익을 약속, 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1조).

-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및 제633조).

3.2.2. 이사

이사의 선임 등

이사의 선임

- 유한회사의 이사는 회사 내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상설기관으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하므로,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상법」 제561조, 제562조 및 제564조제1항 참조).

- 유한회사의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다만, 초대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7조, 제547조제1항 및 제382조제1항).

이사의 자격, 임기 및 보수 등

- 이사의 자격과 임기에는 「상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보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정관에 보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제567조 및 제388조).

이사의 권한

대표권

- 이사는 회사를 대표합니다. 다만,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있어서는 사원총회에서 그 소(訴)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따로 선정합니다(「상법」 제562조제1항 및 제563조).

-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해야 하며, 정관 또는 사원총회로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562조제2항 및 제3항).

-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대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지만, 선의(善意)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567조 및 제209조).

업무집행권

-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상법」 제564조제1항).

- 사원총회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4조제2항).

이사의 의무와 책임 등

이사의 의무

▪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상법」 제567조, 제382조제2항 및 「민법」 제681조),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567조 및 제397조).

▪ 또한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이사의 자기거래**라 하는데,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승인이, 감사가 없는 때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4조제3항).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자본금전보책임

▪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자기거래제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567조, 제397조, 제564조제3항 및 제399조).

▪ 이사는 회사성립 시 출자미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자본금 증가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출자가 있는 때에는 감사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할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551조 및 제594조).

▪ 그 밖에도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결의 당시의 이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607조제4항 전단).

이사의 변경과 해임 등

이사의 변경

▪ 이사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때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3조).

▪ 이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및 제130조).

> ※ **이사변경등기 첨부서류**
>
> 이사변경등기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94호 참조).
>
> · 사원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 ·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 사망진단서(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이사가 사망한 경우
> · 판결 또는 결정등본(금치산, 파산)
>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 주민등록표등본
> · 정관
>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사의 해임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관에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7조 및 제385조제1항).

> ※ 이사의 해임에 관한 '정당한 이유'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해당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이사의 결원

▪ 정관에 이사의 수를 정한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567조 및 제386조제1항).

▪ 필요한 경우 법원은 이사·감사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집행할 사람(임시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7조 및 제386조제2항 전단).

이사 관련 벌칙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 이사가 자신이 맡은 일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거나 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2조제1항).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 또한, 이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5조).

-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변태설립사항에 대하여 법원, 총회 또는 사원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
- 회사의 영업범위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

부실보고 등에 대한 책임

▪ 이사가 회사 조직변경 시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사원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6조).

가장납입에 대한 책임

▪ 이사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假裝)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8조제1항).

▪ 가장행위에 맞추어 행동하거나 이를 중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법」 제628조제2항).

부정한 청탁, 이익의 수수등에 대한 책임

▪ 이사가 그 직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같습니다(「상법」 제630조).

※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 이사가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상법」 제633조).

과태료의 부과

▪ 이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8호, 제22호, 제24호, 제26호 및 제31호).

- 회사와 관련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 회사와 관련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 회사와 관련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 회사와 관련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 관청, 총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 정관·사원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의사록·감사록·재산목록·영업보고서·사무보고서·대차대조표(부속명세서 포함)·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결산보고서·회계장부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경우
-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引繼)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
- 광고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출자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
- 회사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
-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
- 사원에게 배당할 이익 또는 자본감소를 이유로 하지 않고 지분을 위법하게 소각한 경우
-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사원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사원총회를 소집하거나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사원총회를 소집한 경우
- 정관, 사원총회의사록,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합병대차대조표, 사원명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일정비율의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및 법정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때

3.2.3. 감사

감사의 선임 등

감사의 선임

▪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해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으므로(「상법」 제568조제1항), 감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감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사와 감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합니다(「상법」 제570조 및 제382조).

감사의 자격, 임기 및 보수 등

▪ 감사의 자격, 임기에 대한 「상법」상 제한은 없으며, 정관에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의로 이를 결정합니다(「상법」 제570조 및 제388조).

감사의 권한

업무 및 재산감시권

▪ 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9조).

그 밖의 직무권한

▪ 감사는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1조 및 제582조제3항).

▪ 감사는 회사설립무효 소송 및 증자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2조제1항 및 제595조제1항).

▪ 감사는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려고 할 경우, 이사의 이러한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4조제3항).

감사의 의무와 책임 등

감사보고서 작성의무

▪ 감사는 이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서류 및 영업보고서와 관련된 서류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합니다(「상법」 제579조제3항 및 제579조의2제2항).

감사의 책임

▪ 감사는 회사가 성립한 후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합니다.

구분	내용
납입담보 책임	√ 회사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발견된 경우 감사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함께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않은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않은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51조제1항).
인수담보 책임	√ 자본금 증가 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경우 감사는 이사와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94조제2항).
출자미필액 전보책임	√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한 경우 결의 당시의 감사는 이사 및 사원과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607조제4항).
손해배상 책임	√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70조 및 제414조제1항). √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70조 및 제414조제2항). √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70조 및 제414조제3항).

※ 위의 책임 중에서 납입담보책임, 인수담보책임 및 출자미필액전보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94조제3항, 제607조제4항 및 제551조제3항).

감사의 변경과 해임 등

감사의 변경

▪ 감사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3조).

▪ 감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및 제130조).

※ 감사변경등기 첨부서류

감사변경등기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94호 참조).

- 사원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사망진단서(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감사가 사망한 경우
- 판결 또는 결정등본(금치산, 파산)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 정관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감사의 해임

▪ 감사를 해임하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감사의 임기를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0조 및 제385조제1항).

감사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 정관에 감사의 수를 정한 경우에는 감사의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감사는 새로 선임된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570조 및 제386조제1항).

▪ 필요한 경우 법원은 이사·감사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일시적으로 감사의 직무를 집행할 사람(임시감사 등)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0조 및 제386조제2항).

감사 관련 벌칙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 감사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2조제1항).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 또한 감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5조).

▹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변태설립사항에 대하여 법원, 총회 또는 사원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

▹ 회사의 영업범위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

부실보고 등에 대한 책임

▪ 감사가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6조).

가장납입에 대한 책임

▪ 감사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상법」 제628조제1항 및 제2항).

부정한 청탁, 이익의 수수등에 대한 책임

▪ 감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및 제2항).

과태료의 부과

▪ 감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3호, 제5호, 제9호 및 제24호).

- 회사와 관련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 관청, 총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 감사록,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경우
- 감사보고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2.4. 검사인(檢査人)

검사인의 선임 등

검사인의 개념

▪ "검사인"이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원총회 또는 법원에서 선임하는 임시적·임의적 기관을 말합니다.

검사인의 선임

▪ 사원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8조, 제367조제1항 및 제366조제3항).

▪ 회사 또는 출자좌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좌수를 가진 사원은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8조 및 제367조제2항).

▪ 이 밖에도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2조제1항).

검사인의 조사 및 보고

검사인의 조사업무

▪ 검사인은 선임목적에 따라 다음의 조사업무를 수행합니다(「상법」 제582조제1항, 제578조 및 제367조).

검사 선임 목적	검사인 선임 방법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 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	사원총회에서 선임

※ 검사인의 조사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로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3호).

조사결과의 보고

▪ 검사인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82조제2항).

▪ 법원은 전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에게, 감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에게 사원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82조제3항 및 제310조제2항).

검사인 관련 벌칙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 검사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5조).

-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변태설립사항에 관하여 법원·총회 또는 사원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
- 회사의 영업범위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

부정한 청탁 등을 한 경우

▪ 검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

3.3. 정관의 변경 등

3.3.1. 정관의 변경

정관변경의 개념

정관의 변경이란?

▪ 정관의 변경은 회사의 근본규칙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의 정관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등이 정관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정관변경의 자유

▪ 「상법」상 정관의 변경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정관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설립 시 만든 원시정관에서 정관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금지규정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정관변경 방법

사원총회 특별결의

▪ 유한회사의 정관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4조 및 제585조제1항).

※ 정관변경의 결의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7조).

▪ 사원총회 특별결의 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법」 제585조제2항).

변경등기

▪ 정관을 변경한 내용이 등기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3조).

대표적인 정관변경 사항

자본금의 증가 및 감소

▪ 유한회사에서는 자본금의 총액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감소하려면 정관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상법」 제543조제2항제2호).

> ※ 자본금의 증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유한회사 운영-정관의 변경 등-자본금의 증가 >에서 자본금의 감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유한회사 운영-정관의 변경 등-자본금의 감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목적의 변경

▪ 유한회사의 상호·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유한회사의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해야 합니다(「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 및 제179조제1호·제2호).

▪ 상호 또는 목적의 변경사항을 등기하려면 변경사항이 있는 때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3조).

※ 등기신청인이 상호·목적변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 상호 또는 목적의 변경으로 등기를 하려면 유한회사변경등기(상호·목적변경)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93호 참조).

- 사원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 상호·목적변경 등기를 위해 납부할 등록면허세는 4만2백원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및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본점의 이전

▪ 유한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유한회사의 본점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본점 소재지를 변경해야 합니다(「상법」 제543조제2항제5호).

> ※ 유한회사 본점의 이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유한회사 운영-본점·지점의 변경-본점의 이전 및 지점등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2. 자본금의 증가

자본금의 증가

자본금의 증가 방법

▪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관의 기재사항 중 ① 1좌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것, ② 출자좌수를 증가시키는 것, ③ 1좌의 금액과 출자좌수를 모두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1좌의 금액을 증가시키게 되면 추가출자를 강제하는 것이 되어 사원의 유한책임 원칙에 반하므로, 「상법」에서는 출자좌수의 증가만을 자본금의 증가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53조, 제586조 및 제589조 참조).

자본금의 증가절차

사원총회 특별결의

▪ 자본금을 증가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584조 및 제585조제1항).

▪ 또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다음의 사항은 자본금의 증가의 결의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6조).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출자좌수
- 자본금 증가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증가할 자본금에 대한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자의 성명과 그 권리의 내용

> **※ 사후증자에서의 특별결의**
>
> "사후증자"란 유한회사가 그 성립후 2년내에 성립전으로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에 상당한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후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596조 및 제576조제2항).

출자의 인수

▪ 사원은 증가할 자본금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출자의 인수자를 정한 때에는 인수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88조).

▪ 유한회사가 특정한 자에 대하여 장래 그 자본금을 증가할 때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야 합니다(「상법」 제587조).

▪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그 인수할 출자의 좌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한회사는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합니다(「상법」 제589조).

▪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한 자는 출자의 납입의 기일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의 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상법」 제590조).

출자의 이행

▪ 이사는 증가된 자본금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합니다(「상법」 제596조 및 제548조).

▪ 한편,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유한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96조 및 제421조제2항).

자본금 증가 등기

▪ 유한회사는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91조).

※ 등기신청인이 증자변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 자본금 증가 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

자본금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증가변경등기와 함께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57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97호 참조).

- 자본증가에 관한 공증 받은 사원총회 의사록
- 출자금납입증명서(또는 현물출자재산인도증명서)
- 출자인수증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증자변경등기를 위해 납부할 비용은 ① 등록면허세, ② 지방교육세, ③ 등기신청수수료 등 입니다.

- 등록면허세는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4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제1항).
-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 자본금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592조).

자본금 증가에 대한 사원 및 이사 등의 책임

사원의 증자재산 실가전보책임(實價塡補責任)

▪ 현물출자나 재산인수의 목적인 재산의 자본금 증가당시의 실가가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합니다(「상법」 제593조).

이사·감사의 증자미필액 전보책임

▪ 자본금 증가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며, 자본금 증가 후에 아직 인수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합니다(「상법」 제594조 및 제551조제3항).

자본금 증가의 무효

자본금 증가 무효소송

▪ 자본금 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자본금 증가의 등기에 의한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訴)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95조).

3.3.3. 자본금의 감소

자본금의 감소

자본금의 감소 방법

▪ 자본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관의 기재사항 중 ① 1좌의 금액을 감소시키는 것, ② 출자좌수를 감소시키는 것, ③ 1좌의 금액과 출자좌수를 모두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와 달리 1좌의 금액의 감소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세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감소절차

사원총회 특별결의

▪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므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584조 및 제585조).

채권자 이의절차

▪ 이러한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자본금 감소의 방법을 정해야 하며,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597조, 제439조제1항 및 제2항).

▪ 회사채권자가 자본감소에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해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상법」 제597조, 제439조제2항 및 제232조제3항).

자본금 감소의 실행

▪ 1좌의 금액을 감소시킬 경우에는 환급(납입된 자본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 또는 절기(切棄, 납입된 자본금의 일부를 주주의 손실로 하여 주금액으로부터 삭제하는 것)로 자본감소를 실행합니다. 이 때 1좌의 금액감소는 1좌의 금액이 100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감소금액이 출자 각 좌에 대해 균일해야 합니다(「상법」 제546조 참조).

▪ 반면, 출자좌수를 감소시킬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지분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이사가 수인인 경우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0조제1항, 제343조제1항 및 제564조제1항).

자본금 감소 등기

▪ 자본금 감소는 정관변경 사항에 해당하고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금 감소의 실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는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3조).

※ 등기신청인이 감자변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 자본금 감소등기 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58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98호).

- 자본금감소에 관한 공증받은 사원총회 의사록
- 공고와 최고를 증명하는 증명서
- 변제영수증(담보제공증명서) 또는 이의없다는 진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자본금 감소 변경등기를 위해 납부할 비용은 ① 등록면허세, ② 지방교육세, ③ 등기신청수수료 등 입니다.

- 등록면허세는 4만 2백원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제1항).
-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자본금 감소의 무효

자본금 감소 무효소송

▪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사원·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97조 및 제445조).

3.4. 본점·지점의 변경

3.4.1. 본점의 이전 및 지점등기

본점의 이전

본점이전 등기

▪ 유한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소재지가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상법」 제171조).

▪ 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2조제1항).

※ 등기신청인이 본점이전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본점이전등기 신청

▪ 본점이 ①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이전등기를 신청하며, ② 다른 법원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 중 한 곳에서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55조, 「상업등기규칙」 제162조 및 제99조제1항).

▪ 본점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본점이전등기신청서(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 신청서, 타관할로의 본점이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92-1호 및 제92-2호 참조).

- 정관
- 사원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 이사과반수동의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

등록면허세 등

▪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이며,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신(新)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 지점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제1항).

지점등기

지점등기의 종류

▪ 회사는 본점 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점은 본점처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설치하는 지점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점에 관한 등기에는 ① 지점설치등기, ② 지점이전등기, ③ 지점폐지등기가 있습니다(「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3조의2제2항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지점설치등기

▪ 지점설치 등기는 ①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②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1조).

▪ 지점설치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67호 참조).

제출서류
1. 지점설치등기신청서 2. 이사과반수동의서 3.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지점이전등기

▪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2조제2항).

▪ 지점이전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68호 참조).

제출서류
1. 지점이전등기 신청서 2. 이사과반수동의서 3.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지점폐지 등기

▪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회사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지점폐지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제183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69호).

제출서류
1. 지점폐지등기신청서 2. 이사과반수동의서 3.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 등

▪ 지점설치·이전·폐지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 대도시(과밀억제권역을 말함. 이하 같음)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는 3배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3.5. 회사의 회계와 계산 등

3.5.1. 재무제표 등의 작성

재무제표의 작성

이사의 재무제표 작성의무

▪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제1항 및 「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재무제표 제출의무

▪ 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전에 위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사는 이러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제2항 및 제3항).

▪ 만약 회사에 감사가 없는 경우, 이사는 작성된 재무제표 관련 서류를 정기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보통결의)을 요구해야 합니다(「상법」 제583조 및 제449조제1항).

※ 보통결의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는 결의입니다(「상법」 제574조).

영업보고서의 작성

이사의 영업보고서 작성의무

▪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의2제1항).

영업보고서 제출의무

▪ 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전에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사는 영업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의2제2항, 제579조제2항 및 제3항).

▪ 만약 회사에 감사가 없는 경우, 이사는 작성된 영업보고서 관련 서류를 정기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83조 및 제449조제2항).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비치·공시

재무제표 등의 본점비치

▪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5년간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의3제1항).

▪ 유한회사의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러한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9조의3제2항 및 제448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재무제표 관련 서류나 영업보고서의 열람·등사·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4호).

3.5.2. 이익의 배당

이익배당

이익배당의 개념

▪ “이익배당”이란 유한회사가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익배당에는 ① (정기적) 이익배당과 ② 중간배당이 있습니다(「상법」 제580조, 제583조 및 제462조의3).

(정기적) 이익배당

▪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해야 합니다(「상법」 제580조).

▪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3조제1항, 제462조제1항 및 「상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않은 금액

▪ 이를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3조제1항 및 제462조제3항).

▪ 한편, 이익배당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이사 과반수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제583조제1항 및 제462조제2항).

중간배당

▪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이사가 수인인 경우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사원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중간배당"이라 함)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3조제1항, 제462조의3제1항 및 제564조제1항).

▪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합니다(「상법」 제583조제1항 및 제462조의3제2항).

-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 다만,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다음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상법」 제583조제1항, 제462조의3제3항, 제462조제1항 및 「상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않은 금액

▪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위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이러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583조제1항 및 제462조의3제4항).

4. 회사의 합병, 소멸 등

4.1.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4.1.1. 영업양도

영업양도의 개념

영업양도란?

▪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19314 판결).

> ※ **대법원 판례(영업의 양도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
>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
> ※ **대법원 판례(영업의 양도의 판단기준)**
>
>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 [2]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므로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계약이 있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영업재산의 이전 경위에 있어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영업양도가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있고 그 계약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어 「상법」상 영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영업양도와 합병의 비교

▪ 영업양도와 비슷한 조직변경 형태에는 합병이 있습니다. 영업양도와 합병은 다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영업양도	합병
당사자	회사, 개인상인, 비상인(양수인) 간	회사와 회사 간
방식	특정된 방식이 없음	법정의 절차에 따라야 함
재산이전 방법	특정승계(재산의 개별적 이전)	포괄승계
고용이전 여부	포괄승계	포괄승계

영업양도의 유형

영업양도 종류

▪ 영업양도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상법」 제576조제1항 및 제374조).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
> ① 흄관의 제작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소유의 흄관몰드(형틀)를 양도하는 경우(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② 관광호텔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가 호텔신축 부지를 처분한 경우(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 판결), ③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의 수주(受注)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그 특허권이 회사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특허권을 양도한 경우(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
> 또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업용재산의 양도 또는 영업용재산의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 ※ **경영위임**은 영업의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영업재산의 관리와 영업활동이 위임인의 명의로 행하여지는 경우를 말하며, 회사 경영자 외의 사람에게 경영의 위임은 일상적인 업무수행에서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사원총회 특별결의 절차가 필요합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영업양도의 절차

사원총회 특별결의

▪ 유한회사가 영업양도 행위를 할 때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사원의 출자좌수와는 상관없이 사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고 동시에 총사원의 의결권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사원의 동의로 하는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576조제1항 및 제585조).

영업양도 방식(불요식 계약)

▪ 영업양도의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계약은 일반적으로 양도 및 양수받는 회사 간의 영업양도계약서 작성에 따른 서면합의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영업양도의 효과

고용관계의 이전(포괄승계)

▪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영업재산의 이전

▪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018 판결).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

▪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1조제1항).

▪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41조제2항).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상호속용)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2조제1항).

> ※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 이 경우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습니다(「상법」 제42조제2항).

양수인에 대한 변제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43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4조).

※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영업양수인에 대해서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그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상법」 제44조의 법리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받아들이는 취지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도 적용되어, 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위 채무변제의 책임이 발생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 영업양수인이 위에 따라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45조).

4.1.2. 합병

합병의 개념

회사의 합병

- “합병”이란 「상법」 상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고, 회사 구성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 「상법」 및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산(解散)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74조제3항).
  - 다른 회사와의 합병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 회생절차 중인 회사는 회생계획에 ‘합병’에 관한 사항을 정해 합병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210조 및 제211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주권상장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함)가 그 계열회사(계열회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을 포함함)와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주권상장회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합병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65조의4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유한회사의 합병형식

-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74조제2항).

합병절차

합병계약의 체결

- 합병을 하려는 회사의 대표기관 간에 합병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됩니다.
-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603조, 제523조 및 제524조).

구분		기재사항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 존속회사의 합병에 의해 증가하는 출자의 좌수, 출자 1좌의 금액 및 소멸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에 대한 출자의 배정에 관한 사항 √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 합병승인결의를 할 사원총회 기일 √ 합병교부금 √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의 배당 또는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	√ 신설회사의 목적·상호·본점의 소재지 √ 신설회사 각 사원의 출자의 좌수, 출자 1좌의 금액 및 소멸회사의 사원에 대한 출자의 배정에 관한 사항 √ 신설회사 자본의 금액 및 준비금에 관한 사항 √ 각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합병교부금·합병승인결의를 할 사원총회의 기일·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 신설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사원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및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의 배당 또는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	√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과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數)와 본점소재지 √ 설립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수 및 각 회사의 사원 및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 각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기일 및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합병결의

▪ 유한회사에서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사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고 동시에 총사원의 의결권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사람의 동의로 결의)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98조 및 제585조).

▪ 신설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는 합병결의에서 설립위원을 선임해야하며, 선임된 설립위원은 회사의 정관작성 등 설립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대표하여 수행합니다(「상법」 제599조 및 제175조 참조).

※ 설립위원이 맡은 일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거나 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설립위원이 받을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22조 및 제632조).

▪ 이사는 사원총회일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의 서류들을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상법」 제603조 및 제522조의2).

- 합병계약서('합병계약서의 내용'에서 해당 합병계약서 참조)
-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에게 발행하는 주식배정 또는 지분 배정에 관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
-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주주, 사원 또는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 합병계약서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03조 및 제522조의2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합병계약서의 열람·등사·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4호).

회사채권자 이의제기 절차

▪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603조 및 제232조제1항).

▪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03조 및 제232조제2항).

▪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상법」 제603조 및 제232조제3항).

※ 회사(대부분은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를 말함)가 합병결의에 대한 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또는 회사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위반하여 합병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제2호 및 제14호).

지분의 병합 절차

▪ 소멸회사의 지분 1좌의 경제적 가치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지분 1좌의 경제적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때(예, 소멸회사의 지분 2좌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지분 1좌)에는 소멸회사의 사원(대부분 유한회사의 사원이거나 합자·합명회사 사원을 말함)은 자신의 지분을 병합(倂合)해야 합니다.

▪ 병합에 적당하지 않은 수의 지분(출자좌)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배정한 지분을 경매하여 각 좌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사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지분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지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03조 및 제443조제1항).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및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이사는 회사채권자보호절차(회사채권자의 이의제기를 말함) 종료 후, 합병에 의한 지분(또는 주식)의 병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병합의 효력이 발생한 후, 병합에 적합하지 않는 단수(端數)지분(또는 주식)이 있으면 그 처리를 종료한 후 즉시 병합보고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상법」 제603조 및 제526조제1항).

▪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은 회사채권자보호절차(회사채권자의 이의제기를 말함) 종료 후, 합병으로 인한 지분(또는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않는 지분(또는 주식)을 처리한 후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합니다(「상법」 제603조 및 제527조제1항).

합병등기

합병계약의 체결

▪ 위의 합병절차가 끝나면 합병등기를 해야 하며,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는 ① **변경등기**,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는 ② **해산등기**,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는 ③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602조).

▪ 위 각각의 합병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공해야 할 정보 및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159조, 제160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99-1호, 제99-2호, 제99-3호 참조).

구분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공해야 하는 정보

변경등기	√ 변경등기신청서 √ 합병계약서 √ 소멸회사의 합병승인에 대한 공증받은 사원총회 의사록 √ 합병에 관한 공증받은 사원총회 의사록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없다는 진술서 √ 사채상환완료증명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등록면허세는 불입한 주식금액,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
해산등기	√ 해산등기신청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등록면허세는 매 1건당 4만2백원을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

설립등기	√ 설립등기신청서 √ 정관 √ 소멸회사의 공증 받은 사원(주주)총회 의사록 √ 합병계약서 √ 설립위원자격증명서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없다는 진술서 √ 주권제출공고증명서 √ 창립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 이사과반수동의서 √ 취임승낙서 √ 주민등록표등본 √ 사채상환완료증명서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등록면허세는 불입한 주식금액,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

※ 위의 변경등기, 해산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이며, 신설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35,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

합병의 효과 등

합병의 효과

▪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및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의 합병의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603조 및 제234조).

▪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상법」 제603조 및 제235조).

4.1.3. 조직변경

조직변경

조직변경이란?

▪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 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07조).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로는 조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07조 참조).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변경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결의

▪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07조제1항).

▪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07조제2항).

법원의 인가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인가신청은 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관할 법원은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입니다(「상법」 제607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05조).

채권자 이의절차

▪ 회사는 조직변경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608조 및 제232조제1항).

▪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회사채권자는 공고한 날 또는 독촉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면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08조 및 제232조제2항).

▪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상법」 제608조 및 제232조제3항).

※ 조직변경 결의에 대한 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또는 회사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위반하여 조직변경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제2호 및 제14호).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

▪ 유한회사가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607조제5항 및 제606조).

※ 등기신청인이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당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61조).

- 정관
-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

-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정보
- 사채의 상환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상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 해산등기를 위해 납부할 등록면허세는 4만2백원,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

▪ 해산등기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 설립등기 등기신청수수료는 35,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조직변경의 효과

이사 및 감사의 전보책임

▪ 유한회사의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 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 한 때에는 조직변경결의 당시의 이사 및 감사는 사원과 연대하여 부족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총사원의 동의로 이사 및 감사의 전보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07조제4항 및 제551조제3항).

▪ 이사·감사가 회사 조직변경 시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사원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6조).

※ 이사·감사가 받을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사원의 전보책임

▪ 유한회사의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 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 한 때에는 조직변경결의 당시의 사원은 이사 및 감사와 연대하여 부족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원의 전보책임은 면제될 수 없습니다(「상법」 제607조제4항, 제550조제2항 및 제551조제2항).

유한회사 사원지분에 대한 질권행사

▪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에 대해 질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는 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이 되어 그 사원이 주주로서 받을 주식 또는 금전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07조제5항, 제601조제1항 및 제339조).

4.2. 유한회사의 소멸

4.2.1. 유한회사의 해산 등

유한회사의 해산

해산의 개념

▪ "해산"이란 회사가 영리적 활동을 마치고,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해산에 의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해산으로 인해 바로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법인격이 그대로 존속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245조).

유한회사의 해산사유

▪ 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합니다(「상법」 제609조제1항).

-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사원총회의 결의(특별결의)

해산의 효과

- 해산으로 유한회사는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유한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목적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 회사가 합병이나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228조).

  ※ 등기신청인이 해산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 회사가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및 제106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00호 참조).
  - 공증받은 사원총회의사록(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하는 경우)
  - 정관
  -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정보(정관소정의 해산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신청인 자격증명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해산등기신청서와 함께 납부할 등록면허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산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4만2백원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
  -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회사의 계속

회사계속의 개념

- “회사의 계속”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해산된 회사가 회사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사원총회 결의로 다시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계속의 사유 및 절차

- 유한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총회 특별결의(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10조제1항 및 제585조).

회사계속의 등기

▪ 회사가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회사계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611조 및 제229조제3항).

※ 등기신청인이 회사계속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 회사계속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제109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03호 참조).

- 사원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회사계속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만2백원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

▪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4.2.2. 유한회사의 청산

유한회사의 청산

청산의 개념

▪ 일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회사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하고, 이 때 청산절차에 들어간 회사를 “청산 중의 회사”라 합니다. 회사의 청산은 법원이 감독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8조제1항 참조).

청산회사의 권리능력

▪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245조).

청산회사의 기관

청산인의 선임

▪ 청산인은 회사 청산절차에서 이사를 대신하여 회사를 대표하고 청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사가 해산하는 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사원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제255조제1항 및 제531조제1항).

▪ 다만, 회사가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252조).

청산인의 업무

▪ 청산인은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254조제1항).

▪ 청산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청산인 과반수의 결의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담당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제254조제2항 및 제3항).

청산인의 해임

▪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외에는 사원총회 결의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13조제2항 및 제539조제1항).

▪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13조제2항 및 제539조제2항).

청산인에 대한 벌칙

▪ 청산인이 맡은 일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거나 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배행위를 한 청산인에게는 징역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22조 및 제632조).

▪ 청산인이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 제635조제1항제2호, 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22호 및 제29호).

- 회사와 관련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
- 파산선고청구를 게을리 한 경우
- 잔여재산을 위법하게 분배한 경우
-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사원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외의 장소에서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총회소집절차를 위반한 경우
- 청산절차에서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청산절차

청산인의 업무

▪ 청산인은 우선 청산 중인 회사의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회사재산 조사·보고,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회사의 채권추심과 채무 변제, 회사 재산에 대한 환가처분, 잔여재산을 사원 등에게 분배, 청산종결 및 서류보존 업무를 수행합니다.

절차	내용
1. 청산중인 회사의 현존사무를 종결	√ 회사가 해산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무를 완료합니다.

2. 회사재산의 조사 및 보고	√ 청산인은 취임한 후 즉시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533조).
3.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공시	√ 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정기 사원총회일 1주일 전부터 회사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534조).
4. 회사의 채권추심	√ 대물변제, 채권양도, 상계 등을 통해 회사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채무의 변제	**√ 회사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 독촉: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그의 채권을 신고할 것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할 뜻을 2회 이상 공고하여 독촉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535조).**
	√ 회사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청산인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채권신고 기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는 그 변제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536조). **√ 이자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을 변제해야 하며,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적은 경우에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을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 제259조제2항 및 제3항).**

6. 회사재산에 대한 환가처분 및 잔여재산 분배	√ 청산인은 회사재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 환가(換價)처분하고, 회사채권자에게 채무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합니다(「상법」 제613조 및 제260조). √ 잔여재산 분배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분배합니다(「상법」 제612조).
7. 청산종결 및 서류보존	√ 청산인은 청산절차가 끝나면 즉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540조). √ 회사의 장부 및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등기를 한 후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541조).

청산종결 등기

청산종결 등기

▪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264조).

※ 등기신청인이 청산종결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 청산종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및 제110조제2항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02호 참조).

- 사원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등록면허세는 4만2백원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

▪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